

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
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○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!

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제6선거구, 장상기 위원입니다.

본 위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
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
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

공동주택 등의 벽면이용간판의 표시근거를 마련하는 한편
간판의 총 수량에서 제외하고

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

심의안건 처리기간을 현행 15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
재심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입니다.

○ 이는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과
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더불어
그간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.

○ 보다 자세한 내용은

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앞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
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